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3호(2010. 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Vol.5 No.3 September 2010

투고일자: 2010년 8월 27일
심사일자: 2010년 9월 8일(심사자 1), 2010년 9월
8일(심사자 2), 2010년 9월 8일(심사자 3)
게재확정일자: 2010년 9월 10일

일본의 지적재산전략과 기술보호 정책*

김민배**

목 차

- I. 서론
 - 1. 지적재산에 대한 인식과 정책
 - 2. 연구 목적
- II. 일본의 지적재산전략의 현황과 과제
 - 1. 지적자산을 둘러싼 환경 변화
 - 2. 지적재산 현황과 과제
- III. 일본의 제3기 지적재산전략과 정책
 - 1. 기본방침
 - 2. 지적재산의 주요 전략
 - 3. 지적재산의 주요 정책
- IV. 일본의 기술보호정책
 - 1. 중요기술의 보호와 기술유출의 방지
 - 2. 기술보호와 형사적 제재의 확대
- V. 결론

* 이 논문은 2009년도 日本 中央大學 法科大學院 派遣 研究成果의 일부임.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초록

최근 세계적인 금융경제 위기가 일어나면서, 일본에서는 그동안 지적재산입국을 향한 정책과 전략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금융 위기 등에 의해 세계 전체의 경제 활동이 급격히 추락하고, 경제도 그 영향을 받아 기업 실적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앞으로의 지적재산 활동의 대폭적인 축소가 우려되는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격동기야말로 자신들의 강점인 지적자산을 살려, 글로벌 시장 획득과 내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추구해야 할 때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지적재산에 의한 경쟁력강화전문조사위원회 및 콘텐츠·일본브랜드 전문조사위원회는 지적재산 정책의 실시 상황과 그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하는 동시에, 제3기(2009년도~2013년도)의 ‘지적재산전략의 기본방침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각각 검토를 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지적재산입국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즉 일본은 2003년 3월 제1기(2003년도~2005년도)와 제2기(2006년도~2008년도)에 걸쳐 민관이 함께 지적재산 입국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본 논문은 2002년도에 ‘지적재산 입국’을 내건 일본 정부가 지적재산기본법에 의거 설립한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제3기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실 일본은 진정한 의미의 ‘지적재산 입국’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실현하기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지적재산의 창조·보호·활용은 물론 그 지원을 위해 법·제도·정책을 탄력적으로 조화시키면서, 전략을 수립·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지적재산전략을 국내는 물론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수정·보완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그리고 일본이 지적재산 전략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사회의 기업이나 국민들 전체가 참여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는 점도 향후 우리의 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이 최근 특허와 노하우,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등의 지적자산을 국부의 원천으로 내걸고, 지적재산의 창조·보호·활용에 나서는 것도, 바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적재산 입국 목표를 현실화하려는 데 있다. 경제와 부의 원천이 바로 지적재산에 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관된 목표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지적재산기본법을 바탕으로 지난

7년간 쌓아 올린 지적재산전략은 향후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지식재산법의 운용과 정책을 구체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일본의 지적재산전략, 지적재산의 보호, 기술보호, 중요기술, 기술유출

I. 서론

1. 지적재산에 대한 인식과 정책

일본은 지적재산이야말로 ‘국부의 원천’ 이라고 말하고 있다. 동시에 “지적재산 전략이 잘못되면 국가의 미래가 위태롭게 된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세계를 선도하지 않고는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없다. 우리는 세계 최첨단의 지적재산 입국 실현을 위한 행보를 여기서 늦출 수 없다.”¹⁾고 하여, 지적재산²⁾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 2월 고이즈미 총리가 시정 방침 연설에서 ‘지적재산의 전략적 보호·활용’을 국가 목표로 표명한 이후 ‘지적재산 입국’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지적자산을 전략적으로 창조·보호·활용하여, 활력이 넘치는 일본 경제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상을 제시한 이래 지적재산 기본법³⁾에 기초하여, 2003년 3월부터 내각에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제1기(2003년도~2005년도)와 제2기(2006년도~2008년도)에 걸쳐,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지적재산 입국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들이 집행한 바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금융 위기에 의해 일본경제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그 때문에 지적재산 활동의 대폭적인 축소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격동기야말로 일본의 강점인 지적자산을 살려, 글로벌 시장 획득과 내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추구해야 할 때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지적재산에 의한 경쟁력강화전문조사위원회 및 콘텐츠·일본브랜드전문조사위원회는 2006년 2월 지적재산전략본부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6년간의 지적재산 정책의 실시 상황과

1)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yousou/houkoku/090331/090331_housinarikata.html.

2) 최근 한국에서는 ‘지적재산’ 보다는 ‘지식재산’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법안의 명칭도 ‘지식재산기본법(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Intellectual과 Knowledge 등의 용어사용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본 논문은 일본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논한다는 점에서 ‘지적재산’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3) 일본의 知的財産基本法에 대해서는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hourei/kihon.html> 참조

그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하는 동시에, 제3기(2009년도~2013년도)의 '지적재산 전략의 기본방침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이하 '보고서' 라고 함) 각각 검토를 하였다.⁴⁾

일본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적재산 정책의 기본 방침과 전략을 수립하였다. 일본 총리실 직속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08」의 실시상황에 대한 평가결과 개요를 2009년 6월에 발표한 바 있다.⁵⁾ 즉, 그동안의 지적재산추진계획의 실시상황에 관한 각 부처 및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의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일본정부는 지적재산전략과 정책을 끊임없이 수정·보완하면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⁶⁾

2. 연구 목적

그동안 일본은 지적재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제도의 정비를 하였다. 그 결과 대학과 기업 등에서 지적재산에 대한 의식향상이나 체제 정비 등에서 결실을 맺는 성과가 있었다. 즉 지적재산의 권리 보호에 상대적으로 주력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단계에서는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보호를 넘어 창조와 활용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전략적 대처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경제의 세계화, 혁신 과정의 오픈화, 정보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의 진

4) 보고서는 그동안의 지적재산정책 및 관련 데이터를 별책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평가하고, 그 개요 및 향후 강구해야 할 주요 시책을 제II부에 정리하고 있다. 이것을 토대로 향후 지적재산전략의 기본 방침으로서, 제3기에서 지향해야 할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그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인 지표를 포함하여 평가지표 및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중점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책을 추출하여 정리하고 있다. 木村浩一郎 外, 「日本の知財戦略」, 「The Judicial World」, Leader Note(2008), 53-87頁; 知的財産戦略本部 知的財産による競争力強化専門調査会/コンテンツ・日本ブランド専門調査会, 「第3期知的財産戦略の基本方針の在り方について」, 2009年 3月 참조.

5) 평가대상 765항목을 모두 실시했다는 경우는 444항목(58%), 대체적으로 실시하였다는 경우는 294항목(38.4%), 일부 실시하였다는 19항목(2.5%), 실시하지 아니했지만 상황의 변화나 당해 시책의 성격으로 보아 대처를 행하지 아니했던 경우가 8항목(1%)였다. 「知的財産推進計画2009」에서 중점시책으로 할 것이 66항목(17.9%), 추진시책으로 할 것이 178항목(48.2%), 추진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 125항목(33.9%)으로 모두 369건이다.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090624/sankou1.pdf>.

6) 2009년도 6월에 발표된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부처가 담당해야 할 일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090624/2009keikaku.pdf>.

전 등 지적재산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일본이 갖고 있는 우수한 콘텐츠 등 잠재력을 산업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혁신의 주체인 제도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⁷⁾

본 논문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한 일본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적재산 보호전략을 수립하고 있는가에 주된 관심이 있다. 또한 지적재산의 보호와 직결된 지적재산의 창조와 그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왔으며, 향후 수정전략을 어떻게 수립하여 집행할 것인가 하는 점도 검토 대상이다. 이를 위해 일본의 제3기 지적재산전략과 보호정책을 ‘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제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지적재산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하는데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동시에 우리나라 국회에 계류 중인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⁸⁾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적재산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II. 일본의 지적재산전략의 현황과 과제

1. 지적재산을 둘러싼 환경 변화

‘보고서’의 전략이 수립되고 발표된 2009년도에는 이미 초유의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시작된 경제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었다. 자원이 부족하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대해 답해야 할 상황이었다.

7) 한지영, “일본의 지적재산 정책에 관한 소고”, 『창작과 권리』, 통권45호(2006겨울), 37-65면; 지식재산권 연구센터, 『일본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04.10.12.

8) 지식재산기본법(안)은 제17대 국회에 이어 제18대 국회에서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영선, 이병석,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지식재산기본법’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자세한 것은 http://imnews.imbc.com/news/forum/2429944_5492.html 참조.

다른 한편 경제위기와 무관하게 인간·물건·돈·정보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하고, 코스트 경쟁력 있는 신흥국가의 추격 등으로 국제 경쟁이 격화하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콘텐츠·브랜드 등 혁신 지적재산을 창출하고, 그것을 고부가가치가 있는 제품과 서비스로 만들어 효과적으로 경제적 가치창출에 결부시키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⁹⁾

일본은 기술의 고도화·복잡화가 진행되고, 시장변화의 속도가 빠른 점에 착안하여, 사업화 스피드의 가속이나 투입비용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자원뿐만 아니라 외부리소스를 사업 활동에 활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정보의 디지털화·네트워크화의 진전이 저작권법을 위시한 지적재산 제도의 올바른 정착에도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 확대의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소프트 파워의 확산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과 국민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콘텐츠·디자인 등 품질의 향상에 따른 내수확대의 필요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2. 지적재산 현황과 과제

1) 지적재산의 현황과 평가

지적재산전략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혁신의 촉진, 경제의 세계화에 대응, 콘텐츠 산업의 진흥과 일본의 브랜드 가치의 확산, 지적재산권의 안정성 및 예측성 확보, 그리고 이용자 요구에 대한 대응이라는 각각의 관점에서 일본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있다. 일본이 현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혁신의 촉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최근 특허등록 건수는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민 1인당 GDP는 미국의 약 3/4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일부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일본의 지적재산이 경제적 가치창출에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9) 山本英一, “知的財産政策の新展開(1)”, 「知財ぶりずむ」, 財団法人経済産業調査会 知的財産情報センター(2009.01), 75-91頁; 山本英一, “知的財産政策の新展開(2)”, 「知財ぶりずむ」, 財団法人経済産業調査会 知的財産情報センター(2009. 02), 69-88頁 참조.

또한 아시아 신흥국가의 대두와 모듈화의 진전에 따라 가격경쟁에서 일본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이나 고도의 지적재산전략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과 중견·중소기업이 만든 지적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다른 리소스와 유효하게 결합시켜 사업화까지 관여하는 종합 프로듀스의 기능이 취약한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물론 지적재산의 주요 창조거점인 일본 대학의 특허 출원건수나 특허 실시건수는 증가하고 있다.¹⁰⁾ 하지만 기업이나 사회적 수요를 토대로 한 연구테마의 설정·지원, 유용한 기술의 평가·선정, 기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의 제안 등 대학의 지적재산을 산업계에 효과적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기능은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대학의 지적재산을 활용한 벤처 기업은 많이 창출됐지만 그 사업들이 정상궤도에 오른 것은 많지 않다는 평가다.¹¹⁾

그동안 일본에서는 지적재산제도에 대해서 수차례의 법률 개정이나 심사의 신속화를 위한 체제 정비 등이 행하여졌다. 그러나 일본의 기술유출방지나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외국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에서 기술유출을 우려하는 외국기업이나 공동연구의 실시 등에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¹²⁾

10) 일·미 대학 등에서의 지적재산관련활동의 비교에 따르면(日本文部科学省, 経済産業省 조사, 2007년도, 미국 ATUM 조사 FY2007 기준) 대학지적재산본부 등 승인 TLO의 경우 일본은 204기관, 미국 157기관이며, 특허출원건수는 일본 7,601건(2008년), 미국 10,468건이다. 특허취득건수는 일본 886건, 미국 3,258건이며, 실시허락건수는 일본 5,538건, 미국 25,109건이다. 실시료 수입은 일본 11.6억 엔이며, 미국 20.8억 달러이다.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090624/sankou2.pdf>.

11) 일본은 2001년 5월, 대학벤처를 3년간 1,000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대학벤처 1,000사 계획”을 내걸었다. 그 후, 대학 벤처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3월말 시점에서 1,809개사에 달한다. 이로 인한 경제효과는 경제산업성의 추산에 따르면 고용자수에 직접적 효과가 약 1.7만명, 매출액 약 2,700억엔, 간접적인 경제 파급 효과도 포함하여 약 3.3만명, 약 4,800억엔이라고 한다.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090624/sankou2.pdf>.

12) 김민배, “일본의 기술보호 동향과 전망 - 영업비밀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09 상반기 발표논문」, 2009, 1-30면 참조; 김민배 편역, 「기술 정보의 적절한 관리의 나아갈 방향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명문미디어 아트팩, 2009, 10면 이하.

2) 글로벌 차원의 현황과 과제

일본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활력을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국가마다 서로 다른 지적재산 제도가 국제적인 사업 활동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적자산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보호·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 특허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미국·일본·유럽 특허청간에 출원양식 통일, 심사기준, 심사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는 협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특허협력조약(PCT)¹³⁾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련된 전자출원 처리 시스템도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실제 특허법조약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¹⁴⁾의 취급 등을 놓고, 미국 유럽 사이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 지적재산제도의 보급을 위해 인재육성 및 출원 처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을 하였지만 해당 국가의 제도나 운용 등의 정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경제성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에 대해서는 일본의 특허 등의 출원수가 미국보다 적다. 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해외출원 비율은 서양의 1/2 이하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다. 일본에서는 지적자산을 통한 해외 시장 확장과 국제적 조직에 대한 대응의식이 낮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국제 표준화기구의 의장이나 간사 등의 직책을 맡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이에 대한 그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¹⁵⁾

일본에서는 지난 5년간 지적재산의 침해사범에 대한 검거사건수가 두 배로

13) <http://www.pct.go.kr/>

14) 발명 공표에서 특허 출원까지 인정된 유예 기간을 말한다.

15) ITU에서는 2007년 10월 열린 ITU-R 회의에서 SG(Study Group) 구성의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2008년부터 2011년 회기의 6개의 SG와 RAG(Radio Advisory Group) 중 1개의 의장 포스트와 2개의 부의장 포스트를 차지하였다. 또한 2008년 10월 열린 ITU-T 회의에서 SG 구성의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2009년부터 2012년 회기의 10SG와 TSAG(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중 2개의 의장 포스트와 7개의 부의장 포스트를 차지하였다. ISO에서는 2007년에 4개의 TC/SC(Technical Committee/Sub-committee)에 대해, IEC에서는 1개의 SC에 신규로 간사국이 되었다. 2008년말 현재 ISO에서 59, IEC에서 15간사를 차지하고 있다.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090624/sankou2.pdf>.

증가하였고, 지적재산 침해물품의 수입금지 건수도 3배로 증가했다.¹⁶⁾ 하지만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본 상품의 모조품이나 해적판의 유통을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¹⁷⁾ 더 큰 문제는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인터넷에서 해적판과 모조품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원활한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3)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과제

일본의 만화·애니메이션·게임 등이 해외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콘텐츠 산업은 그 성장률에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JAPAN 국제 콘텐츠 페스티벌'의 개최¹⁸⁾ 등을 통해 해외로의 정보 확산을 촉진하고 있지만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비율은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콘텐츠 산업을 어떻게 해외시장에서 개척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의 범람 등이 기업의 적정한 이익 확보를 저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수익악화를 넘어 개인과 기업의 창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 기술 진보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적재산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다수의 권리가 병존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유통 경로의 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지역단체 상표 도입 등이 행하여지고 있지만 브랜드를 지원하는 지적재산제도가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¹⁹⁾

16) 2008년 지적재산권침해사범은 상표권 246건, 저작권 115건, 기타 24건을 적발하여 처벌하였다. 자세한 것은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090624/sankou2.pdf>. 참조.

17) 베트남에서의 대책은 www.jpo.go.jp/torikumi/mohouhin/.../johou/.../h12_viet.pdf; 중동에서의 대책은 www.jpo.go.jp/torikumi/mohouhin/mohouhin2/.../chuuto.pdf. 참조.

18) www.cofesta.jp/2007/CoFesta_koria.pdf.

19) 일본은 지적재산전략 본부에서 日本ブランド戦略(2009)을 발표하고, 정책집행을 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houkoku/090310_nihonbland.pdf. 지역차원에서의 브랜드전

4) 법적 분쟁의 현황과 과제

지적재산권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지적재산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²⁰⁾ 그러나 침해소송에서 특허가 무효로 판단되는 사건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무효로 판단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사 단계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선행기술²¹⁾이 사후에 제출되거나 법원과 특허청 사이에서 특허성에 대한 판단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허의 효과를 무효 심판과 특허 침해 소송의 양측에 의해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더블 트랙'에 관한 현행 일본의 제도가 특허권의 안정성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²²⁾

한편 일본 국내외 경제의 급속한 감속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와도 맞물려 국내외에서의 권리·취득 단계에서 분쟁·소송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 제도의 이용과 관련된 비용의 구조가 문제시되고 있다. 일본 역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취득과 유지가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Ⅲ. 일본의 제3기 지적재산전략과 정책

략은 二村宏志, 「地域ブランド戦略ハンドブック」, ぎょうせい, 2008 참조.

20) 일본은 2005년 4월 분쟁의 신속한 처리, 판결의 예측 가능성과 기술 등 지적재산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적재산고등법원이 발족했다. 지적재산고등법원은 4개부와 함께 사실상 재판의 조기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5인 합의제(대합의제)의 특별부도 설치되었다. 또한 전문적인 지적재산소송 등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2009년 3월말 현재 지적재산에 관한 법원조사관 11명과 전문위원 201명이 각각 임명되었다. 또한 2008년 1월부터 12월 사이 지적재산고등법원의 신규 접수 건수는 591건, 기제출 건수는 603건(그 가운데 대합의 1건)이다.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090624/sankou2.pdf>.

21) 일본은 2004년 10월 '특허심사신속화법'의 일부가 시행되어, 공익법인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특허심사에 필요한 선행 기술조사를 특허청으로부터 아웃소싱이 가능해졌다. 2009년 3월 현재 8기관이 등록되어 있다. 또한 기존의 등록 조사기관을 포함한 선행 기술조사의 아웃소싱은 22.5만개로 확대되었다. 이 중 18.0만건이 심사효율이 높은 대화형 아웃소싱(직접 대면 설명)으로 행하여 졌다.

22) <http://hatumeika.cocolog-nifty.com/blog/2009/04/post-b3d7.html>

1. 기본방침

일본의 지적재산전략은 지적자산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토대로 일본의 현황과 과제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핵심이 있다. 첫째, 혁신촉진을 위해 지적재산전략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혁신적인 지적자산을 창출하고, 그 권리보호를 중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적재산의 창조에서 활용까지 각 과정을 유기적이고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제도와 사업 환경을 발전시켜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글로벌 관점에서 지적재산전략을 강화하고 있다.²³⁾ 국가마다 다른 지적재산제도와 그 운영이 기업의 세계화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 지적재산제도의 조화, 심사 업무와 워크셰어링(work sharing)²⁴⁾ 확대, 해외에서 모방품·해적판 대책 등 국제적인 프레임 워크 만들기에 더욱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콘텐츠 산업을 시작으로 하는 소프트파워와 산업진흥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일본기업의 강점이었던 제조 산업분야에서 디자인과 브랜드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잠재력을 갖고 있는 소프트파워를 창조·확산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소비자의 뛰어난 감성에 의해 길러진 콘텐츠, 음식,²⁵⁾ 패션, 디자인 등 소프트파워와 연계된 산업을 향후 일본경제를 견인하는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해 중점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넷째, 지적재산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권리의 안정성·예견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투자 등이 수포로 돌아가 원활한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²⁶⁾ 권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23) 山本英一, “知的財産政策の新展開(3)”, 「知財ぷりずむ」, 財団法人経済産業調査會 知的財産情報センター, 2009. 04, 14-33頁.

24) <http://matimura.cocolog-nifty.com/matimulog/2008/12/work-sharing-72.html>

25) 2008년 3월, 식품산업 분야에 특화된 기술 유출 방식을 소개한 ‘食品産業에서 의도하지 않은 技術流出 防止 指針’을 발표하였다. http://www.maff.go.jp/j/press/soushoku/sanki/pdf/080317_1-02.pdf.

26) ‘映画の盗撮の防止に関する法律’에 대해서는

것은 지적재산 제도의 근간이고, 이를 위해 지적자산을 둘러싼 분쟁처리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른 한편 제도 이용자의 시각에서 그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지적재산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본다. 지적재산 제도의 이용과 관련된 비용 구조와 이용하기 어려운 법률 및 심사 기준 등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지적재산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전략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술·콘텐츠·브랜드 등 우수한 지적재산들을 창조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경제적 가치의 창출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 정책의 실효성·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지표에 따라 그 이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를 토대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일본이 정책평가를 실시에 있어서 정량적 지표에 근거한 평가뿐만 아니라 시책의 실시 상황과 그 성과에 관련된 질적 평가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점은 획기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 지적재산의 주요 전략

첫째, 혁신전략(IP for Innovation)이다.²⁷⁾ 일본은 중요한 지적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경제적 가치창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촉진을 위한 지적재산전략이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정책 목표로서 기술 혁신과 시장 변화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지적재산제도의 재구축 필요성을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과 중견·중소기업이 만든 지적자산을 관리하고, 다른 자원과 접목하여 사업화에 연결하여 종합 프로듀스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활동영역에서 연구개발·지적재산·사업전략의 삼위일체를 촉진하고, 이것을 담당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http://www.shugiin.go.jp/itdb_gian.nsf/html/gian/honbun/houan/g16601026.htm

27) 知的財産戦略本部 知的財産による競争力強化専門調査会/コンテンツ・日本ブランド専門調査会の 보고서 제II부 “향후 강구해야 할 주요 시책”의 (2. (1) (iv) ①); 知的財産戦略本部, 「知的財産推進計劃 2009」, 2009. 6, 2-8頁 참조.

둘째, 글로벌 전략(Global IP)이다. 전 세계규모의 혁신창출 및 사업 전개를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관점에서 지적재산전략을 강화한다는 것이다.²⁸⁾ 이를 위해 세계 지적재산 시스템구축을 위한 지도력을 발휘하며,²⁹⁾ 높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 등에 대한 지적재산제도의 정비·적절한 운영에 관해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해외에서 모조품·해적판³⁰⁾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조직정비를 주도하고, 외국정부에 의한 체제정비와 집행강화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기업이나 대학의 해외 활동과 해외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의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소프트산업전략(Promotion of Soft Power Industries)이다. 일본은 콘텐츠, 음식, 패션, 디자인 등 소프트파워를 창출하는 산업의 성장전략을 추진한다는 전략을 수립·집행하고 있다.³¹⁾ 이를 위해 소프트파워 산업의 성장을 목표로 새로운 창조 및 신규 서비스의 창출을 지원하고, 일본 브랜드의 해외 확산 능력 강화 등을 통해 해외 전개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크리에이터의 창작 환경의 육성이나 인터넷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대책³²⁾도 도모하고 있다. 그 기반 정비를 위해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대응한 지적재산 제도와 원활하고 공정한 계약환경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넷째, 안정성 및 예측성 전략(Stable IP and User-Friendliness)이다. 비즈니스 리스크 감소를 위해 지적재산권의 안정성·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28) 평가지표로서는 특허 해외출원 비율,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이용 건수, 대상국가 수, 이용자 만족도(설문조사), 일본 기업의 모방제품·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율(설문조사), 국제 표준화기관의 의장, 간사 등 포스트 획득 수, 대학의 해외 연구비 비율 등이다.

29) WIPO전략과 지적 재산권외교에 대해서는 知的財産戰略本部, 위의 보고서, 9-10頁 참조.

30) 「模倣品・海賊版撲滅防止條約(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假稱)」構想について, <http://www.meti.go.jp/press/20071023001/20071023001.html>, 2008년 일본 내각부의 특별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직 국민의 50% 이상의 사람이 모조품·해적판 구입을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모조품·해적판을 구매하지 않기 위한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http://www8.cao.go.jp/survey/h20/index-h20.html>.

31) 평가 지표로는 콘텐츠, 음식, 패션 산업의 규모, 콘텐츠 산업의 해외 의존도, 영화, 음악 등 각 분야의 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내 작품의 비율, 집중 관리 단체가 관리하는 위임자수, 위임 범위 내용, 콘텐츠 관련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정비, 방문 횟수,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사범에 관련된 검거 사건 수, 검거 인원,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 대일 여론 조사 등이다.

32) 저작권법에 '간접침해'에 관해, 행위주체의 사고방식을 위시하여, 금지청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 등에 대해 조속히 검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知的財産戰略本部, 앞의 보고서, 15-24頁.

강화한다는 정책이다.³³⁾ 즉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가 무효로 판정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실행하고, 특허청 심사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거나 특허의 유효성 판단에 관련된 분쟁 처리체계 검토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안정성·예측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 위주의 지적재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적재산제도의 이용과 관련된 비용 절감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스템 이용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여,³⁴⁾ 발전이 계속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지적재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³⁵⁾

3. 지적재산의 주요 정책

1) 국제 지적재산 시스템구축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세계 각국의 지적재산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세계특허시스템의 구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세계 특허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세계특허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³⁶⁾ 이를 위해 첫째,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대상국가 확대 및 운영을 개선한다. 즉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에 대해, 유럽 특허청을 비롯한 다른 지역도 대상에 추가하는 등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복수국가 간 PPH에 관한 절차의 공통화를 도모하면서, 참여국가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추구한다. 또한, 출원인으로 부터 PPH에 대한 개선 요구에 의거하여, 상대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둘째, 워크셰어링의 실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미·일·유럽 삼자 특허청 간에 설치된 “워크셰어링 강화발

33) 평가 지표로는 특허청의 심사의 질이나 특허권 안정성·예견성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설문 조사)를 사용한다. 知的財産戦略本部, 앞의 보고서, 25-26頁.

34)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yousou/dai11/siryou2.pdf>

35) <http://www.meti.go.jp/press/20060616004/gaiyou.pdf>

36) 知的財産戦略本部, 앞의 보고서, 42頁.

전위킹그룹”을 활용하여, 심사기준, 심사의 질의 조화 등에 대처한다는 것이다.³⁷⁾ 셋째, 영어권 선행기술 문헌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의 선행 기술문헌도 국내 선행기술 문헌과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위한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미·일·유럽 삼자 특허청간에 작업 공유를 위한 적합한 선행기술 문헌 검색환경의 정비를 위한 논의를 진전시킨다. 그리고 넷째, 국제적인 제도협정과 심사업무의 워크셰어링 확대를 위해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아시아 지역 등의 지적재산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을 실시하고자 한다.³⁸⁾ 첫째, 일본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지적재산 인재 육성 등에 관한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상대국의 요구와 환경 정비 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인재 육성, 심사 협력, 정보화 시스템 등에 대한 지원을 계속 실시한다. 둘째, 해외의 지적재산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일본 기업체의 해외 특허 출원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 국내업체의 구체적 요구 등을 감안하여, 아시아 국가나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의 지적재산 관련 정보제공을 한다. 셋째, 경제성장이 현저한 국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일본 국내업체의 출원동향 등을 감안하면서,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에 대한 지적재산제도와 운영체제의 정비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2) 지적재산심사의 신속화

첫번째 평가관점은 심사청구, 심사결과의 현황을 토대로 향후 특허 심사의 신속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특허심사의 신속화는 중복 연구배제, 기술개발 경쟁의 활성화 등을 통해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³⁹⁾

37) 知的財産戦略本部, 앞의 보고서, 9頁.

38) 知的財産戦略本部, 앞의 보고서, 43~44頁.

39) 그 결과 심사 청구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심사대기 기간을 28.3개월에 마치고도 하였다.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contents_brand/dai11/siryou2_1.pdf

이를 위해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⁴⁰⁾ 첫째, 심사 대기 기간의 단축을 위해 필요한 심사관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 지원인력(선행 기술 조사 등을 하는 보조 직원)의 채용 확대 등 심사관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둘째, 출원·심사청구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한다. 낭비없는 전략적 권리취득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전자도서관(IPDL)⁴¹⁾의 검색 기능을 향상시킨다. 셋째, 출원인에 의한 출원취하를 촉진하기 위해 일차심사 이전에 출원취하에 대하여 행하는 심사 청구료의 반액반환 제도에 대해서는 환수금액의 증가가 가져올 출원인의 도덕적 해이문제⁴²⁾에 유의하면서, 환수금액 조정방안에 대해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평가의 관점은 식물품종 등록출원건수의 증가를 전제로 향후 식물품종 등록출원의 심사의 신속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⁴³⁾ 식물품종 등록에 관한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등록 품종의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시작으로 한 심사등록 업무축진을 위한 종합 전자시스템 정비, 심사관의 계획적인 확보·양성, 해외 심사 기관과 심사협력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3) 지적재산의 안정성 및 예측성

일본은 지적재산 고등법원 설치, 특허 등 소송에 대한 제1심의 전속관할권, 재판관을 기술적 측면에서 보좌하는 전문위원회 제도 도입, 침해소송과 특허청의 무효심판과의 연계 강화 등을 실시해왔다. 이러한 일련의 시책의 결과 법원의 평균 심리기간이 단축됨과 동시에 권리에측가능성에 대해서 ‘높아졌다’⁴⁴⁾는

40) 知的財産戦略本部, 앞의 보고서, 25頁.

41) <http://www.lib.nara-wu.ac.jp/tokkyo.html>

42) 통상적으로 전액반환을 행하는 제도로 하는 경우 일단 심사청구를 하고, 나중에 취하하면 된다는 동기부여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43) 식물품종 등록제도에 관해서는 2005년도에는 심사기간이 3.2년이었지만 2007년도에는 2.9년으로 단축하였다. 2010년도까지 출원 건수가 2,000건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평균 심사 기간을 2.5년으로 한다.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contents_brand/dai11/siryou2_1.pdf

44)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contents_brand/dai11/siryou2_1.pdf

평가가 있었다.

일본정부는 앞으로 강구해야 할 주요 시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⁴⁵⁾ 우선 무효판단의 요인을 분석 하도록 한다. 일본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가 무효가 되는 사안을 조사하고,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원인 분석을 한다. 그리고 특허의 유효성이 무효심판과 특허침해소송에서 무효항변 양쪽으로 다룰 수 있다는 더블 트랙의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또한 출원공개 전에 심사가 행하여져, 제3자에 의한 정보 제공의 기회없이 특허권을 부여하는 안건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해 특허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에 의한 외부전문가활용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다.

사법부 관계자, 변리사, 법학자,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심사기준 전문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투명성이 높은 심사 기준의 책정 메커니즘을 조기에 정착시킨다. 그리고 심사, 심판, 재판에서 판단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심사기준 및 제도운영에 관하여 부단히 점검하고, 필요한 검토를 행한다. 특히 산업계에서 관심이 높은 진보성 판단기준에서 조기에 문제점을 점검하도록 한다. 또한 의장권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데드카피(Dead Copy)⁴⁶⁾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의장의 권리범위의 명확화 및 디자이너의 창작 활동의 기반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의장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 공개촉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다.

4) 이용자 요구의 반영

지적재산 시스템에 관련된 사용자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업무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⁴⁷⁾ 보호 대상이나 판단 기준

45) 知的財産戦略本部, 앞의 보고서, 62-63頁.

46) 데드 카피란 제품 개발시에 다른 기업의 동종 제품을 모방해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http://www.taideomou.com/archives/50748103.html>

47) 知的財産戦略本部, 앞의 보고서, 27頁.

이 국내외 사용자들에게 보다 간단하며, 예견 가능하도록 일본 특허청의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 수수료 감면제도는 특허 특별 회계의 수지 상황, 이용자 요구, 다른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 및 감면범위 확충 등에 관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감면신청 절차에 관해서는 이용자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를 들면, 신청 서류 간소화, 사전 심사를 생략하고, 허위 신청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에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제도를 잘 알고, 외국어를 잘하는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변리사, 지적재산전략 등 종합 어드바이저 형의 변리사 등 높은 자질을 갖춘 변리사의 육성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 출원시의 명세서 번역 비용 절감을 위해, 일본어로의 자동 번역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문장의 간명성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해외 특허 정보를 이용하기 좋은 환경을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중국·한국의 특허 정보를 포함, 해외 특허 정보를 일본어로 자동 번역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용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⁴⁸⁾

IV. 일본의 기술보호정책

1. 중요기술의 보호와 기술유출의 방지

1) 중요기술의 보호문제

일본은 해외 아웃소싱시에 발생하는 기술유출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다. 해외 글로벌 전개에 따라 증대하는 기술유출의 위험성에 대비하고, 기업에 대한 적절한 보호책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내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등에 정확하게

48) 知的財産戦略本部, 앞의 보고서, 64頁.

대응하고, 보호 대상, 기간 등의 검토를 적절히 하고 있는가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⁴⁹⁾

우선 의료분야의 특허보호 범위확대, 실용신안 제도의 개혁, 지역단체 상표 도입 등 지식재산제도와 그 운영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시로 검토해왔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특허 제도에 대해서는 보호대상·보호기간 이외에도 적절한 권리 행사의 방안, 실시허락 의사의 등록제도, 분쟁처리 체계검토 등 혁신 촉진의 관점에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일본은 첨단의료 분야의 특허 보호 방향과 관련하여, 첨단의료 특허검토위원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첨단의료 분야의 특허 보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입장이다.⁵⁰⁾

또한 상표제도에 대해서는 사용되지 않은 상표권이 새로운 상표선택의 폭을 좁히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⁵¹⁾ 상표제도의 국제적인 제도 조화 등의 관점에서 현행 상표법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홀로그램, 움직임, 소리 등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사용되지 않은 상표권이 새로운 상표선택의 폭을 좁혀 신상품 새로운 서비스 사업 전개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비사용상표절감이나 상표권의 원활한 검색을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파산한 업체들이 명목상의 권리자가 되어 있는 미사용 상표에 의해 후원의 상표출원이 거절되는 문제에 관해, 미사용 취소심판 이외의 방안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⁵²⁾

2) 의도하지 않은 기술유출 방지

일본에서는 노하우 등의 정보를 소유하는 측의 정보관리에 대한 마인드 및 관리체제의 수준에 대해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다. 타사의 자체개발이 어려운 기술이나 특허권 침해발견이 곤란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출원 공개보다 영업 비밀로 비닉(秘匿)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노하우를 영업

49) 知的財産戦略本部, 앞의 보고서, 48頁.

50) 知的財産戦略本部, 앞의 보고서, 2頁.

51) <http://www.jp-ta.jp/committee/003.html>

52) 知的財産戦略本部, 앞의 보고서, 9頁.

비밀로 적절하게 관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원하지 않고, 그 노하우를 경쟁력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나 금형 산업 등 일부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성과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학, 중소기업체의 노하우 및 기술 정보의 관리에 대한 마인드와 정보관리 체제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진단이다.⁵³⁾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기술유출 방지에 대해 적절히 규제를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일본에서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도입, 그 처벌의 단계적 인상 등 수차례에 걸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세계화·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기술 유출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침해죄를 영업비밀의 사용·개시행위로 한정해서는 억지력이 없다는 판단이다.⁵⁴⁾ 또한 재판의 공개요청을 배려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대한 제약 우려와 원활한 소송 절차 확보에 유의하면서도 형사소송절차에서 영업 비밀의 내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⁵⁵⁾

또한 해외로 의도하지 않은 기술이나 지적재산이 유출되는데 대해 충분한 방어조치가 강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영업 비밀을 외국에서 사용·개시하는 행위를 형사적 제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각종 지침 등에서도 해외로의 기술 유출방지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⁵⁶⁾ 그러나 글로벌화

53) 이지평, 「일본의 기술보호주의 대두와 대응방안」, LG경제연구원, 2005. 03; 이원희, “기술보호주의의 부상과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2007. 12. 17.

54) 2004년 1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제조기술과 고객명단 등의 영업 비밀을 부정하게 취득, 사용 또는 개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되었다. 2005년 6월 개정에서는 영업 비밀을 외국에서 사용·개시한 자의 처벌이나 재직 중에 신청·청탁을 받고 퇴직 후 영업 비밀을 누설한 퇴직자의 처벌, 엑세스 권한이 없는 경우 영업비밀침해죄의 범인이 속한 법인의 처벌 등이 포함되어, 같은 해 11월 시행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에는 2003년 1월에 발표된 「영업비밀 관리 지침」이 2005년에 개정되었다. 2009년 4월 개정에서는 영업비밀침해죄의 목적 사항을 ‘부정 경쟁의 목적’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음 목적’ 또는 ‘보유자에게 손해를 주는 목적’으로 수정하여, 영업비밀 침해죄의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태양에 행위영업비밀 관리에 관한 임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여 영업비밀을 기록한 매체 등을 횡령하는 행위,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 등을 추가했다.

<http://www.meti.go.jp/policy/economy/chizai/chiteki/trade-secret.html>

55) 知的財産戦略本部, 앞의 보고서, 41頁.

56) <http://www.meti.go.jp/report/downloadfiles/g30314b03j.pdf>

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 기업의 해외로의 기술유출의 위험이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에서 해외로의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가 다시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⁵⁷⁾

2. 기술보호와 형사적 제재의 확대

1) 일본의 기술보호 시각

일본은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도 일본은 자국 기업의 중요한 기술 정보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형식이나 경로가 다양하다는 점 때문에 그 대처 방식에 골몰하고 있다.⁵⁸⁾ 정보 유출이 일본의 산업 경쟁력에 강한 영향을 주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노하우 유출로 인한 위기의식도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안보 측면에서도 최근에는 군사·민생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범용기술(dual use)⁵⁹⁾의 등장과 통제에도 관심이 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기술 유출 통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유출 경로가 종전과 같은 ‘물건’에 의한 유출에서 사람의 이동이나 디지털 정보 등 무체물에 의한 유출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학회 발표에서 합법적으로 정보가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도 역시 주목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다양한 유출 경로와 대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대책을 검토한 바 있다.⁶⁰⁾

일본이 종합적인 방지대책으로 새로운 입법을 고려한 것은 기술정보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지금까지 기소된

57) <http://www.meti.go.jp/policy/economy/chizai/chiteki/trade-secret.html#bousi>; 김민배·이윤호·박준석, “산업기술유출방지법상 국가핵심기술의 효율적 통제 방안”, 「한국국가정보학회 2009년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09 참조.

58) 기술유출의 경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거의 유사하다. 박성배, “날로 심각해지는 산업기술유출”, 「SEI 경영노트」, 2009. 06. 1-9면; 박성배, “특허분쟁 대응과 기술유출 방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CEO Information」, 2010. 05. 1-20면.

59) http://www.armscontrol.org/act/2009_07-08/GAO

60) <http://www.business-j.jp/news/for-page/chizai/200801160012o.nwc>.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사례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검증해야한다⁶¹⁾고 하는데서 알 수 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2) 기술보호 관련입법 동향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업의 중요한 기술 정보 등에 대한 산업스파이 행위를 막기 위해 향후 ‘기술정보적정관리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밝힌바 있다.⁶²⁾ 해외 일본 기업의 정보 유출이 심화하면서, 그동안 형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기술정보 절취를 막아내어,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또한 특허법을 개정해 국가안보측면에서 군사전용 등이 가능한 중요한 특허는 비공개 특허로 한다는 방침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⁶³⁾

기술유출과 관련한 기업의 입증책임 문제,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기초로 미국의 ‘FNSA’⁶⁴⁾와 같이 비밀정보나 기술정보 등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현행 특허 제도를 우려하면서, 군사 전용이 가능한 기술 정보에 대한 제한이나 비공개 제도인 비밀특허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일본은 기술보호와 관련하여, ‘외국환관리 및 외국무역법’, ‘부정경쟁방지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외국환관리 및 외국무역법’의 주된 개정 이유는 기술유출 방지의 철저와 기업의 수출관리강화에 목표가 있다.⁶⁵⁾ 구체적으로 안전보장과 관련한 예민기술의 대외거래 규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중계무

61) 産業構造審議會知的財産政策部會 技術情報保護等の在り方に關する小委員會,「營業秘密に係る刑事的措置の見直しの方向性について(案)」, 平成21年 2月; 中原裕彦, “技術情報管理とイノベーション”, 「日本知財學會誌」, 5巻2號(2009), 12-16頁;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정책국 지적재산정책실 中原裕彦 室長の 인터뷰 기사 참조 <http://www.business-i.jp/news/tor-page/chizai/200801160012o.nwc>

62) 그러나 2010년 8월 현재 이 법률은 제정되지 아니하였다.

63) 김민배, “국가핵심기술 기준과 국가안전보장”, 「산업보안 연구논총」, 제5호 2009. 3), 1-47면; 「産業スパイ防止へ新法」, 讀賣新聞, 2008.01.15.

64) 김민배, “국가안전보장과 투자규제- 미국의 대외투자규제와 국가안전법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45호(2009), 243-264면 참조.

65) 高木悠一, “外國爲替及び外國貿易法改正の概要- 技術流出防止の徹底と企業の輸出管理強化に向けて-”, 「NBL」(2009.6), 70-74頁.

역 거래 규제, 수출사업자의 준수강화, 북한을 염두에 둔 벌칙의 강화 등이다.⁶⁶⁾ 그리고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형사적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2009년 4월 일본의 국회에서 통과되었다.⁶⁷⁾

3) 영업 비밀과 형사적 조치의 확대

일본에서는 지식 집약형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무형 자산인 기술·노하우·아이디어 등의 가치 있는 정보의 작성, 관리, 사용 등이 기업의 경쟁력 유지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있다. 물론 가치 있는 정보들이 만약 발명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취득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나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출원 공개를 통해 정보 내용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기업 등의 내부에서는 발명에 해당하는 정보라도 그것을 영업 비밀로 관리하고, 정보의 내용을 비닉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발명과 같은 형식에 맞지 않는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이지만, 특허 출원을 하는 정보만큼 중요성을 갖고 있어, 타인과 차별화·우위성 유지를 위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재산적 정보는 그 가치가 손실되지 않도록 정보 보유자 자신이 상응하는 노력을 하여, 비밀로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통신 인프라 및 전송 매체 장비 기술개발 등을 통해 정보의 이전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기업이 상응하는 노력을 통해 비밀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행위에 의해 이 비밀 관리 체제가 뚫리는 사안이 다발하고 있어,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이런 기술보호 상황 등을 감안하여 1990년에 부정경쟁 방지법을 개정한바 있다. 이 개정안에서는 비밀관리성·유용성·비공지성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영업 비밀의 부정취득·사용·개시 행위에 대해 민사 보호 규정

66) <http://www.meti.go.jp/press/20090227002/20090227002.html>: 經濟産業省, 「外國爲替及び外國貿易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平成21年2月.

67) 日本 不正競争防止法 第21條가 그 대상이다.

이 창설되었으며, 영업 비밀의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권 및 손해 배상 청구권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사회적 변화, 즉 네트워크화의 진전, 세계화의 진행,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적 성장 등으로 배경으로,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 강화가 요구되었다. 2003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⁶⁸⁾에 의해 ‘영업비밀 침해죄’가 새롭게 규정된 이후 단계적인 벌칙 상향, 국외범에 대한 벌칙의 적용, 퇴직자 처벌 도입 등 영업 비밀에 관련된 형사적인 조치에 관한 법정비가 계속되고 있다.

V. 결론

일본은 진정한 의미에서 ‘지적재산 입국’이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지적재산의 창조·보호·활용은 물론 그 지원을 위해 법·제도·정책을 탄력적으로 조화시키면서, 전략을 수립·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지적재산전략을 국내는 물론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수정·보완하는 점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지적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주요 기관의 포스트는 물론 지적재산의 보호와 관련 산업발전이 빠른 국가나 침해를 범하는 국가들의 지적재산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정책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 비난보다는 지원과 육성 그리고 유기적 연대를 통해 지적재산 보호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일본이 지적재산전략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사회의 기업이

68) 그러나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법 개정의 방식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영업 비밀의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일본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의해 1990년에 민사적인 보호 정책이, 2003년에는 형사적 보호규정이 마련됐다. 특히 영업 비밀에 관련된 범죄 최고형에 대해 2005년 개정에 의하여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으로 엄벌화한 직후, 2006년에는 바로 징역 10년으로 형벌을 2배로 하는 것이었다. 형벌법규의 법 개정이 이처럼 가볍게 처리되는 것 자체가 일본의 입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으로 우려할 현상이라는 것이다. 日本弁護士連合會, 『営業秘密に係る刑事的措置の見直しの方向性について(案)』に關する意見書, 2009년 1월 30일.

<http://www.nichibenren.or.jp/ja/opinion/report/data/20090130.pdf>.

나 국민들 전체가 참여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는 점도 향후 우리의 전략수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기업·정부 등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각 최선의 노력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갖추어야만 지적재산입국을 더 빨리 그리고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최근 특허와 노하우,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등의 지적자산을 국부의 원천으로 내걸고, 지적재산의 창조·보호·활용에 나서는 것도, 바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적재산입국 목표를 현실화하려는데 있다. 경제와 부의 원천이 바로 지적재산에 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관된 목표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총리실 직속으로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운영하면서, 지적재산과 관련된 대학, 기업, 정부 등의 모든 부문에서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재검토하고, 그를 바탕으로 세계에 통용되는 제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매우 계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일본이 지적재산기본법을 바탕으로 지난 7년간 쌓아 올린 지적재산전략은 향후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지식재산법의 전략을 수립하고 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지적재산전략의 기본방침과 지적재산보호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지적재산의 창조나 활용을 위한 일본의 전략에도 깊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일본의 경제수준과 해외 전략이 우리나라와 다르게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일본이 지난 7년간 경험한 전략과 향후 5년간 실시를 전제로 한 제3기 지적재산전략의 시행과 집행은 우리나라의 지적재산정책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추적과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진흥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경험한 시행착오와 실패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 법규, 문화, 산업기술수준, 기술보호 정책 등의 차이에서 오는 점을 간과하고, 실적만을 강조하는 경우 지식재산 진흥정책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정책도 우리가 처한 지식재산의 수준과 국민적 수준을 바탕으로 실시할 수 밖에 없다.⁶⁹⁾ 그

69)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중국의 지식재산전략을 벤치마킹하여, 진흥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최근 인천광역시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5개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려는 시도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지 못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특허와 산업기술을

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 국가들의 사례를 연구 검토하여, 한국에 적합한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전략을 수립하여 운용하는 일본의 지적재산정책은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추적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바탕으로 지역경제는 물론 기업의 가치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지식재산정책에 있어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지식재산진흥을 위한 10대 전략과 세부실천과제로서 50대의 과제를 설정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그 운영과 성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성패여부는 전적으로 예산과 인력지원에 달려 있다. 김민배·최정철 외, 「인천지식재산진흥계획(최종보고서)」,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2010, 1-420면.

참고문헌

- 김민배 편역, 「기술 정보의 적절한 관리의 나아갈 방향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명문미디어 아트팩, 2009.
- 김민배 편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해석」, 명문미디어 아트팩, 2009.
- 김민배 · 최정철 외, 「인천지식재산진흥계획(최종보고서)」,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2010.
- 김민배, “국가안전보장과 투자규제-미국의 대외투자규제와 국가안전법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45호(2009).
- _____, “국가핵심기술 기준과 국가안전보장”, 「산업보안 연구논총」, 제5호(2009. 3),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 _____, “일본의 기술보호동향과 전망”, 「산업보안연구학회 2009 상반기 학술대회 주제발표 자료집」, 2009.
- 김민배 · 이윤호 · 박준석, “산업기술유출방지법상 국가핵심기술의 효율적 통제 방안”, 「한국국가정보학회 2009년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09.
- 박성배, “날로 심각해지는 산업기술유출”, 「SERI 경영노트」, 2009. 06.
- _____, “특허분쟁 대응과 기술유출 방지 -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CEO Information」, 2010. 05.
- 이원희, “기술보호주의의 부상과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2007. 12. 17.
- 이지평, 「일본의 기술보호주의 대두와 대응방안」, LG경제연구원, 2005. 03.
- 지식재산권 연구센터, 「일본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04. 10. 12.
- 한지영, “일본의 지적재산정책에 관한 소고”, 「창작과 권리」, 통권45호(2006겨울).
- 「産業スパイ防止へ新法」, 讀賣新聞, 2008.01.15.
- 高木悠一, “外國爲替及び外國貿易法改正の概要- 技術流出防止の徹底と企業の輸出管理強化に向けて-”, 「NBL」(2009.6).
- 木村浩一郎外, “日本の知財戦略”, 「The Judicial World」, Leader Note(2009).
- 山本英一, “知的財産政策の新展開(1)”, 「知財ふりずむ」, 財団法人經濟産業調査會 知的財産情報 センター(2009.01).

山本英一, “知的財産政策の新展開(2)”, 「知財ふりずむ」, 財団法人経済産業調査会 知的財産情報 センター(2009.02).

_____, “知的財産政策の新展開(3)”, 「知財ふりずむ」, 財団法人経済産業調査会 知的財産情報 センター(2009.3).

産業構造審議会知的財産政策部会 技術情報の保護等の在り方に關する小委員会, 「營業秘密に係る刑事的措置の見直しの方向性について(案)」, 平成21年 2月.

二村 宏志, 「地域ブランド戦略ハンドブック」, ぎょうせい (2008).

中原裕彦, “技術情報管理とイノベーション”, 「日本知財學會誌」, 5巻2號(2009).

知的財産戦略本部 知的財産による競争力強化専門調査会, 「政策レビュー及び第3期知的財産戦略の基本方針の在り方 について(案)」, 平成21年2月.

知的財産戦略本部 コンテンツ・日本ブランド専門調査会, 「日本・ブランド戦略 - ソフトパワー産業を成長の原動力に - 」, 平成21年3月.

知的財産戦略本部, 「知的財産戦略の進捗状況 - 知的財産推進計劃2009 参考2 - 」, 2009年6月.

_____, 「知的財産推進計劃2009」, 2009年6月.

_____, 「知的財産推進計劃2008の實施状況に對する評價 - 知的財産推進計劃2009 参考1 - 」, 2009年6月.

經濟産業省, 「技術流出防止指針 - 意圖せざる技術流出の防止のために - 」, 平成15年 3月.

經濟産業省及び關係省廳, 「政府模倣品・海賊版對策總合窓口年次報告書【概要】」, 平成18年6月.

<http://hatumeika.cocolog-nifty.com/blog/2009/04/post-b3d7.html>

http://imnews.imbc.com/news/forum/2429944_5492.html

<http://matimura.cocolog-nifty.com/matimulog/2008/12/work-sharing-72.html>

<http://www.ipr.go.jp/index.html>

<http://www.jp-ta.jp/committee/003.html>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090624/2009keikaku.pdf>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090624/sankou1.pdf>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090624/sankou2.pdf>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houkoku/090310_nihonbland.pdf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contents_brand/dai11/siryou2_1.pdf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yousou/dai11/siryou2.pdf>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yousou/houkoku/090331/090331_housinarikata.html
<http://www.lib.nara-wu.ac.jp/tokkyo.html>
http://www.maff.go.jp/j/press/soushoku/sanki/pdf/080317_1-02.pdf
<http://www.meti.go.jp/policy/economy/chizai/chiteki/trade-secret.html>
<http://www.meti.go.jp/policy/economy/chizai/chiteki/trade-secret.html#bousi>
<http://www.meti.go.jp/press/20060616004/gaiyou.pdf>
<http://www.meti.go.jp/report/downloadfiles/g30314b03j.pdf>
http://www.mof.go.jp/jouhou/kanzei/fta_epa/fta_epa.htm
<http://www.pct.go.kr/>
http://www.shugiin.go.jp/itdb_gian.nsf/html/gian/honbun/houan/g16601026.html
<http://www.taideomou.com/archives/50748103.html>
<http://www8.cao.go.jp/survey/h20/index-h20.html>
www.cofesta.jp/2007/CoFesta_koria.pdf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nd the Technology Protection Policy of Japan

Kim, Min-Bae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nd the technology protection policy of Japan. Particularly, This paper focus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report of third period of Japan.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Headquarters of Japan will promote five principles below in a comprehensive and unified manner based on the “Basic Policy of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for the Third Period”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veness.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c Program 2009” shall put into shape the priority measures listed in the “Basic Policy of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for the Third Perio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of Japan is as follows : First, strengthen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to promote innovation. 2nd, strengthening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3rd, promoting the growth strategy of soft power industries. 4th, securing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fifth, establishing an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that corresponds to needs of users.

Japan will strengthen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to promote innovation in order to obtain many important intellectual properties and effectively use them to create economic value. Japan will strengthen its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from a global perspective, in order to facilitate innovative creations and business expansions on an international scale. Japan will designate the industries related to content creation, food, fashion, and other soft power-creating industries as a type of strategic industry. In order to reduce business risks, Japan will

strengthen measures to ensure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order to reduce the costs related to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systems and enhance the quality of services, Japan will make further efforts to establish intellectual property systems with emphasis on user convenience.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of Japan, this paper studies on the key matters. Chapter 1 explains the intellectual property awareness in Japan and the purpose of this paper. Chapter 2 discusses background of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of Japan. Chapter 3 discusses the strategic direction of the policy of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for the third period of Japan. Chapter 4 were reviewed for technology protection and policy of Japan. and chapter 5 is the conclusion of the paper.

Keywords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of Japa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Technology protection, Critical technology, Trade secrets, Technology leakage.